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향 **확정**

기본통신시장 개방과 관련된 다자간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0일 체신부는 통신사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편집자주-

개 요

통신시장 환경변화

- 통신기술의 발달
 - 기술발달로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 등 서비스간 융합 확산.
 - 서비스 융합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합병·제휴 등 통합추세
- 국제화의 진전
 - 기본통신 다자간협상 등을 통한 개방화 논의 확산
 - 선진국을 중심으로 통신사업 경쟁도입 및 규제완화 추이
 - 통신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 국내여건의 변화
 - 고도통신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 증대
 - 국내기업들의 통신시장 참여욕구 증대

현행제도의 미비점

- 사업자 및 서비스 분류체계의 경직성

-서비스간 진입 제한으로 통신사업자의 사업 다각화에 한계

-신규서비스의 도입지체현상 발생

- 통신사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미흡
 - 독점 또는 제한적 경쟁으로 대외경쟁력 확보가 미흡
 - 요금승인등 행정규제로 사업자의 신속적 사업 운영에 제약

주요 개편방향

-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 일반 / 특정의 사업자 구분을 철폐
 - 사업의 다각화·거대화 등 세계적 추세에 부응
 - 경쟁력있는 국내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통신사업 규제완화
 - 사업영역, 사업자수 및 지분제한 완화
 - 요금 등 행정규제의 완화 및 규제기능의 정비
 -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잉여설비 활용 확대
- 기본통신시장 경쟁확대

- 시외전화사업에 대한 경쟁도입
- 국제전화사업에 대한 경쟁확대
- 새로운 서비스도입 방향제시
 -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및 시험 활성화
 - 개인휴대통신(PCS)등 첨단서비스 사업구도 확립

구조개편의 목표

- 통신시장 구조개편을 통하여 통신사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국민의 통신편익을 증진
- 궁극적으로는 국가전반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

사업자 분류체계 개선

현행 사업자 분류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일반통신사업자	특정통신사업자	
정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전신전화, 통신망제공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기통신설비를 설치·보유하고 무선전화, 무선휘출등 기술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일반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설비를 임차하여 컴퓨터통신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영역	전화, 전신, 전보, 전용회선, 데이터통신, 팩시밀리	이동전화, 무선휘출, 향만통신, 공항통신,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온라인 DB/DP, 부가가치통신, 데이터단순전송
진입조건	지정	허가	등록

- 특징
 - 통신설비 보유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이중 기간통신사업은 다시 기술적·지역적 제한 여부에 따라 일반통신사업과 특정통신사업으로 분류
 - 통신사업자별 사업영역을 법령에 일일이 열거(Positive 방식)하고 상호간 사업영역을 엄격히 구분
 - 통신사업자별로 지정/허가/등록에 의한 진입 허용
- 문제점
 - 일반/특정으로 나누어 각 사업자 상호간 사업영역을 엄격히 구분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 유·무선통합등 기술변화 추이에 맞춰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
- 각 사업자의 사업영역을 열거된 서비스의 제공으로 국한함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적극적인 개발·보급이 곤란
-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정과 허가는 제도운용구분의 실익이 없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은 사업활성화를 위해 완화함이 바람직

새로운 사업자 분류체계

-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특정 세분폐지
 - 유선(일반통신사업)과 무선(특정통신사업)간의 구분없이 능력있는 사업자의 사업 다각화

및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

-실제사업영역은 사업자별 허가서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규제

○ 통신사업자의 영역구분방식 개선

-공공성이 강하여 정부가 사업자의 자격과 이용조건 등을 규제하는 규제서비스만을 열거 (Negative 방식)

※ 예 : 전화, 전용회선, 이동전화, 무선호출, PCS, TRS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는 비규제서비스로 함

○ 추진조건은 각각 허가 및 신고로 완화

분 류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정 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설비를 임차한 사업자
사업영역	규제서비스중 허가받은 서비스와 모든 비규제 서비스	모든 비규제서비스
진입조건	허 가	신 고

기간통신사업자 지분구조 조성

- 일반 / 특정사업자 구분폐지에 따라 지분한도를 현행 특정통신 사업자 수준으로 통일
- 다만, 전화(시내·시외·국제)사업은 통신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을 감안하여 현행 한도 유지

구 분	현 행	개 정
대 주 주	일반:10%, 특정:1/3	1/3 (전화사업은 10%)
설비제조업체	일반: 3%, 특정:10%	10% (전화사업은 3%)
외 국 인	일반:금지, 특정:1/3	1/3 (전화사업은 금지)
정부투자기관	10%	10%

※설비제조업체, 외국인, 정부투자기관은 대주주 불허

-대주주의 지분은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정책방향과 대기업 경쟁력 집중의 억제정책을 고려

-설비제조업체의 지분은 서비스의 수직결합에 따른 폐해와 경쟁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감안

-외국인의 지분참여는 현행대로 불허

- 정부투자기관의 지분한도는 민간의 창의와 활력에 의한 사업활성화를 위해 현행 유지

통신사업 규제완화

요금 등 사업규제 완화

-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요금결정에 관한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
 - 서비스별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하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제 시행
 - 경쟁여건이 조성된 분야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요금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 ※시외전화요금을 공공요금에서 제외하여 사업자간 요금규제의 형평 유지
- 법령에 의한 통신사업자수 제한폐지
- 기간통신사업자간 상호출자 제한완화
 - 상호제휴, 경영합리화 등을 위해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호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
-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
 - 사업자간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인 각종 제도를 정비

자가통신설비 이용규제 완화

- 검토배경
 -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잉여설비를 통한 통신 시장 참여 요구

-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자가통신 설비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잉여통신설비 활용 필요

- 기간통신사업자 지위 부여시 문제점
 - 정부투자기관인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본래의 설립취지에 어긋남
 - 통신사업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경쟁도입 취지에 위배
 -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이에 상응하는 통신망을 확충하기 위한 대규모 신규투자를 유발함으로써 새로운 중복투자 문제를 야기

- 추진방향
 - 추가적인 투자부담이 과다해 지지 않도록 잉여설비의 활용 범위내에서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서비스제공에 관련된 범위내에서 설비설치 승인, 요금인가 등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관련규정 준용

규모기관 기능 및 조직개편

- 필요성
 - 현행 규제제도는 정책·규제·감독기능이 통신사업 관리 전담부서에 집중
 - 독점사업자 감독 및 규제에 적합
 - 시장기능 활성화와 더불어 규제기능과 정책기능 분리 추세
 - 공정경쟁, 사업자분쟁조정, 이용자권익보호 기능의 강화 필요
 - 규제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 시급
- 개편방향
 - 통신위원회 상설화 추진
 - 상임위원 및 사무국 신설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

-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 규제 및 공정경쟁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심의·의결기능 확대 추진
- 공정경쟁 보장장치 마련 및 집행, 사업자간 분쟁조정 등 공정경쟁 관련사항
-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요금 이의제기 등 소비자 보호 관련사항

시외전화 경쟁도입

경쟁도입의 필요성

- 통신수요의 다양화·고도화 추세에 대처
 - 양적인 통신수요의 충족과 질적 욕구확대
 - 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의 고도화·다양화 가속
- 기본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비
 - UR다자간협상에서 기본통신시장에 대한 제도적 진입장벽의 제거 및 정부규제완화 요구가 주요쟁점화
 - ※장거리·국제통신서비스 참여, 회선재판매 허용, 원가주의 요금정책등
- 기본통신시장의 체질강화가 시급
 - 요금과 원가의 현격한 괴리, 기술 및 경영능력의 열세로 인하여 국내시장은 구조적으로 대외개방에 취약
- 경쟁을 통한 국내사업자의 대외경쟁력제고가 요구됨

국민의 다양화·고도화라는 통신수요를 충족시키고 기본통신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국내통신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도입이 불가변함.

경쟁을 위한 필수적 선행조치

- 요금조정
 - 시내전화는 적자, 시외전화는 흑자인 현행 요금체제를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시내·외 요금을 조정
- 적정한 경쟁제도의 확립
 - 통신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하는 회사기준을 제정
 - 타 통신망간의 접속료제도 설정등

국제전화 경쟁확대

- 시내전화 경쟁도입과 연계한 국제전화 경쟁확대
 - 시내전화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국제전화사업도 허가
 - 건전한 경쟁환경을 유지하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전화시장에만 신규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은 불허

적정경쟁을 위한 시장진입의 억제대책

- 신규사업자에게 보편적 서비스의무 및 연구개발출연의무 부과
- 시장규모 및 사업자 설비의 적정성 여부 평가

신규서비스 조기도입

신규서비스 정책목표

- 정책목표의 우선순위
 - 해당 신규서비스에 대한 대체서비스가 존재하고 국내의 기술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술개발을 우선
 - 해당 신규서비스에 대체서비스가 없을 경우,

서비스 적용화를 우선

- 기술개발의 활성화
 - 신규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험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함(단, 주파수 허가는 유지)
 - 사업자 허가시에 기술개발실적을 고려

개인휴대통신(PCS)

- 서비스의 특징
 - 이동전화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보행자용 무선통신서비스
 - 이동전화와 경쟁관계에 있는 차세대 주력 통신서비스
 - 유·무선 복합기술이 응용되어 산업파급효과가 지대할 전망
 - 조속한 국내기술개발이 경쟁력 확보에 긴급
- 사업구역 및 사업시기
 - 사업구역은 전국으로 하여 전국 접속이 가능한 서비스제공
 - 사업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선정하여 사업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서비스의 조기 상용화를 유도
- 사업자 수
 - 국내 기술개발 능력의 효율적 집중과 조기 투자부담을 감안하여 하나의 사업자를 우선 허가
 - 주파수 여건과 기술개발 및 수요추세를 감안하여 점차적으로 경쟁을 확대
 - 초기 사업자는 조속한 통신망 구축, 기술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가장 유리한 사업자로 선정

주파수 공용통신(TRS)

- 서비스 특징

- 주파수를 공용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정지역 집단내에서 이동간에 사용 가능한 통신서비스

○ 도입방침

- 초기사업성이 불투명하고 국내 기술기반이 취약하므로 전국사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지역사업자는 시장여건이 성숙된 후 선정

- 전국사업자

· 우선 항만전화(주)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

· 추후 디지털방식의 전국사업자 하나를 추가로 허가

- 지역사업자

· 사업허가는 가용주파수, 통신방식, 지역특성 및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

· 사업구역은 허가신청자가 신청시에 신축성 있게 설정

저궤도행성통신(LEO)

○ 서비스 특징

- 지구상공 저궤도에 다수의 행성을 배치하여 지상의 휴대 단말기로 세계 어디든지 통신이 가능한 통신서비스

- 가입자 이용방식은 지상통신망을 통한 위성접속방식과 직접 위성접속방식으로 대별

- 기존의 이동전화 및 국제전화와 경쟁 예상

○ 도입의 검토

- 국내에 지상통신망설비를 갖는 경우

· 국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 사업허가 시기 및 사업자 수는 현재 진행중인 계획들의 구체화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 국내지상통신설비없이 가입자가 직접 위성을 접속하는 경우

· 외국통신사업자가 국내에서 직접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결과를 초래

· ITU 등 국제기구의 결정과 기본통신다자간협상결과에 따라 허용여부 결정

발신전용휴대전화(CT-2)

○ 휴대단말기로부터 무선기지국을 통하여 공중통신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발신전용서비스

- '94. 12월 여의도 지역에서 한국통신이 시험서비스 제공 예정

○ 현재 기술적으로는 안정되어 있으나 수요가 불확실하므로 시험서비스 결과를 보아 사업자 선정

향후일정

○ '94. 7~8 관련법률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 '94. 9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 '94. 12 개정법률 공포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